입법동향 – 2024년 제11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전라남도 이륜차 소음 관리 조례」 ····· 1
2.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 4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7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15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입법례 ····· 21
2. 「독일의 유통노동자 휴일 휴식권 관련」 입법례 ····· 29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1.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36
2. 의회 도서 자료실 신착 도서 목록 ····· 42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의원 발의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51
2. 이·통장이 세금 체납 시 상여금 지급 정지 조례 제정 가능 여부 ····· 55

Ⅵ. 법령 해석 사례

1. 환경정비구역 내 거주민이 주택 신축 시 생활기반시설 해당 여부 ····· 59
2.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변경 가능 여부 ····· 65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시행 2024. 10. 4., 전라남도조례 제6106호, 2024. 10. 4., 제정】

□ 소관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23. 6. 13)됨에 따라 **각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점검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5조).

나. 소음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제6조).

다.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제10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5곳(경기, 부산, 인천, 전남, 충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우리 도**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총 99,191**(2024. 10.기준)대로 17개 시·도 중에서 **9번째**로 많음(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코로나 19 이후 **배달음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대행 오토바이 등의 과속, 소음 등으로 **수면방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 우리 도에서도 **시·군, 경찰서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도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체계적인 소음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시행 2024. 10. 4., 전라남도조례 제6106호, 2024. 10. 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및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전라남도경찰청 교통 담당 공무원**
3.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 담당 공무원**
4. 교통관련 전문기관에서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련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및 시·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도지사는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시행 2024. 9. 27., 대전광역시조례 제6335호, 2024. 9. 27., 제정】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매년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20세 이하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에 대해 규정함(제4조, 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4곳(광주, 대전, 부산, 인천)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함.(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

○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사례**는 **총 108건**이며(1명 사망, 123명 크게 다침), **음주 적발건수**는 **총 14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1년 16건, '22년 50건, '23년 58건)

○ 최근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자전거 등의 사용 증가**로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면허취득, 인명보호장비 착용, 관련 교통법규 등**을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시행 2024. 9. 27., 대전광역시조례 제63335호, 2024. 9. 2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지원 재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현장교육) 학교장은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8조(교육위탁)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누리집, 가정통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0조(지원)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7호, 2024. 10.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에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현 행('24. 2. 6.)	개 정('24. 10. 8. 일부개정)
제7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도는 「전북특별

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제정: 2015년, 일부 개정: 3회)

○ **조례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 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등 선출	**시·도지사가 임명**	**위원 중에서 호선**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9.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시설장비 구축 사업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홍보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교육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도지사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도민

제6조(응급장비 홍보)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장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일반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및 관리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장비사용 및 관리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용설명서 및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교육을 실시해 응급환자 발생 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는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의 건물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전북특별자치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응급의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한 때
3. 품위를 유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업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수집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4.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을 위한 지원
5.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지역응급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개선 방안 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제17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그 업무를 전담하는 3명 이상의 단원을 포함하여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18조(위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을 의료기관, 관계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지원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운영사항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의 분리)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부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4호, 2024. 11.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24. 3. 19.)	개 정('24. 11. 5. 일부개정)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관련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비해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가로구역: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완화(1만제곱미터 미만 → 1만3천제곱미터 미만)되어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 바,

** 사업시행구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9.,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76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1조 (생략)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일 것

2) 건설·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권리가액”이란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을 말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

3.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 ~ 제18조 (생략)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건설할 것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것

제20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시·군의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주거지역에서의 대지 분할제한 규모 규모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1조 ~ 제30조 (생략)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21호, 통권 제259호, 최서지】

◇ **미국 연방법인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친밀한 관계’란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있었던 관계로 정의하고, **판단기준**으로 관계의 지속기간·유형·당사자 간 상호작용 빈도를 고려한다고 규정한다. 연방법에 근거하여 주(州)정부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하여 신고의무, 가중처벌 및 보호명령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보호를 규정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제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의 강압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든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피해자 수는 늘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을 별도의 **특례법으로 제정하여 규제하는 방식**과 가정폭력의 범주에 교제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포함시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 **미국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 피해자 권리보장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관련한 연방법과 주법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교제관계의 폭력에 대한 법적 정립을 비롯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에 참고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제어	교제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 여성폭력방지법, 친밀한 관계 내 폭력

□ 도입

❍ **미국은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는 **연방과 주정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의 범위를 가정폭력에서 보다 확대**하여 배우자, 동거인,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까지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개념상 **상당 부분 중첩**되지만,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또는 교제관계 등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나라** 경찰청이 공식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살인 및 살인미수** 피의자 778명 가운데 **192명(24.6%)이**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와 연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 경찰은 2023년부터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분류기준에 전·현 배우자, 사실혼, 전 애인 등을 추가하였다.

❍ 교제폭력이 더 이상 사적영역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중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교제관계를 포함하는 '친밀한(intimate)' 관계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연방의 「여성폭력방지법」

1. 개요

❍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의 입법 목적**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피해자의 보호에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관할하는 주정부가 피해자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규정**하였다.

-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가정폭력**은 부끄러운 개인적 문제 또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조**되었다. 또한 동법에 근거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방자금이 지원**되며, 이는 5년마다 갱신된다.

2. 친밀한 관계의 정의

❍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또는 학대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폭력, 스토킹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정하고 있다.

-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으로 정의된다. **친밀한 관계의 존재 여부**는 **(1) 관계의 기간, (2) 관계의 유형, (3) 관계에 연관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친밀한 관계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및 시도, 피해자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강압적 행동패턴,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학대행위 등을 포괄**한다.

❍ 용어상으로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가정폭력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의 범위**에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 혈연관계에 기반하는 가족 구성원, 친밀한 파트너 관계와 교제관계까지 포괄한다.

- 친밀한 관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적용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포괄적인 규정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좀 더 유연한 법 적용 및 해석이 가능한 영미법 체계상의 특징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개념 비교

구분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친밀한 관계 내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
정의	•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등을 포함한 가족이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 간의 폭력행위	• 동거, 애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개인 간의 폭력
적용 대상	• 가족이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여 확대 적용	• 교제 상대, 동거인 등
법적 보호	•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 가정폭력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행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며, 재정적, 정서적, 심리적 행동의 통제를 포함
연방 및 주법 규정	• 연방과 주 차원에서 모두 규제되며, 다양한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	• 대부분 주법의 가정폭력 법률을 적용하며, 일부 주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특정한 법률 적용

출처: 연방 및 주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대부분의 주법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 상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만, 일부 주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표 2 주(州)별 친밀한 관계의 정의

주(州)	주요 내용
앨라배마[5]	• 낭만적이거나 친밀한 성격이 중요한 관계로, 일정기간 동안 애정이나 성적인 관계를 기대하는 것이 특징이며 관계가 지속됨 • 결혼하기 위한 약혼 기간을 포함 •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나 사업상 관계 또는 보호명령 제출 12개월 전에 종료된 관계는 포함하지 않음
캔자스[6]	• 낭만적인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며, 법원은 관계의 성격, 관계 유지 기간,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빈도, 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친밀한 관계 여부를 판단함
캘리포니아[7]	• 빈번한 교류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함 • 재정적 요인과 상관없이 애정이나 성적 기대를 특징으로 함

3. 피해자 보호 지원

❍ **연방 법무부 형사부**(Criminal Division)**는 '피해자 통지시스템**(Victim Notification System)**'을 운영**하여 **가해자의 형사절차 과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피해자는**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하는 사법 공무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제1조).

❍ **또한 연방정부는** 「여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성폭행 및 스토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집행기관과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3 연방 보조금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여성에 대한 범죄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법집행, 사법시스템 및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 범죄자 기소,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사건처리를 위한 법집행기관 및 직원 교육
자격	• 주·지방정부, 가정폭력 및 성폭행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비정부 기구
주요 내용	• 법무부 산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사무소(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관리 • 위기 개입, 상담,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서비스 •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성폭행 및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는 법집행관, 검사 및 판사의 교육 지원 • 폭력범죄 대응정책 개발 및 이행

□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법

1. 신고의무

❍ **대부분의 주**에서 상해를 입은 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며, 일부 주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한다. 아래 [표 4]에서 소개하는 주(州)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표 4 주(州)별 신고의무 규정

주(州)	주요 내용
뉴햄프셔[10]	• 총상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는 부상을 치료하거나 돕는 사람은 부상당한 사람이 성적 폭행이나 학대의 희생자이고, 이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공개하는 것에 당사자가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해야 함.
캘리포니아[11]	• 의료진은 총기나 '폭행 또는 학대행위'(24가지 범죄 포함)로 인해 신체적 부상을 입은 환자를 알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함.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지역 피해자 보호서비스를 추천하고, 의료 제공자는 의료기록에 가정폭력을 자세히 기록해야 함.
켄터키[12]	• 경찰은 학대당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와 권장사항을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장관은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정신 및 건강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사유지에 들어갈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대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보호해야 함.
콜로라도[13]	• 의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상을 포함하여 무기로 인한 부상이나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부상을 치료하는 경우 법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함.

2. 가중처벌

❍ **일부 주에서는** 연인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에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친밀한 관계 간 폭력에 대한 특별조항**을 규정하기도 한다.

표 5 주(州)별 가중처벌 규정

주(州)	주요 내용
루이지애나[14]	• 재정적 요인 및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애정을 기반으로 한 친밀한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함 •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대한 폭행은 재범의 경우 형량이 가중되며, 양형에는 피해자 연령, 임신 여부, 고의적인 신체상해, 위험한 무기 사용 등을 고려함
메인[15]	• 가정폭력에 가족이나 교제상대에 대한 다양한 학대행위를 포함하며, 두려움을 초래하거나 해를 입히려는 의도에 의한 행위도 포함됨 • 가족 또는 교제관계에 있는 경우 가중처벌함
캘리포니아[16]	• 친밀한 관계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함 • 정도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음
콜로라도[17]	•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3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급 중범죄로 격상될 수 있음

3. 보호명령

❍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날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에 **일부 주에서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규정**한다.

표 6 주(州)별 보호명령 규정

주(州)	주요 내용
뉴욕[18]	•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에 의해 학대나 위협에 직면한 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임시 또는 영구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음
캘리포니아[19]	• 빈번한 상호작용이 있고, 실질적인 낭만적 성격의 관계에 있는 자는 접근금지 명령 등의 가정폭력보호명령(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을 신청할 수 있음
텍사스[20]	•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에 의한 폭력, 스토킹 또는 폭력의 위협이 있는 경우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은 접근금지, 총기반납을 명할 수 있음
플로리다[21]	• 지난 6개월 내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하여** 범행의 종류에 따라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스토킹 행위가 없는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

❍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발의된 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폭력에 대한 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 의한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으로 나뉜다.**

❍ **미국은 연방법인 「여성폭력방지법」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배우자 외에 동거인, 교제상대 등을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로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연방 차원의 보호를 제공**한다. 특히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죄의 수사 및 기소와 관련한 사항, 즉 범죄 수사의 진행 상황, 용의자의 체포, 범죄자의 석방 또는 구금 상태, 판결 선고, 가석방 날짜를 포함한 형량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대부분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사건은 주 또는 지방 당국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에서는 주 및 지방의 형사사법제도 이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에서는 신고 의무, 가중처벌, 보호명령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규정**한다. 교제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연방과 주의 입법례는**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개선해 나감에 있어 참고가 될 것이다

추천 자료

- 검찰청 보도자료, 교제폭력 등 폭력범죄 처벌 강화, 2023.3.8.
- 김혜미,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의 법적 정당성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4.3.31.
- 심선희, 친밀한 관계 폭력의 주요 형태와 정책적 대응을 위한 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3.8.

2 독일의 유통노동자 휴일 휴식권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18호, 통권 제256호, 환경노동위원회】

◇ **우리나라는**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2024년 1월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영업규제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독일은** 연방헌법의 일요일 및 공휴일 휴식권의 취지를 반영하여, **1956년 제정된 「상점 폐점법 (LadSchlG)」**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일요일과 공휴일에 상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56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에서 **'공휴일 물류멈춤**(Feiertags-Fahrverbote für Lkw)**'**을 **규정하여 실시**해 왔다.

◇ 노동자에게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의 유통업 노동자를 위한 공휴일 휴식권 보호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 관련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 주제어 물류멈춤, 휴식권,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유통업

□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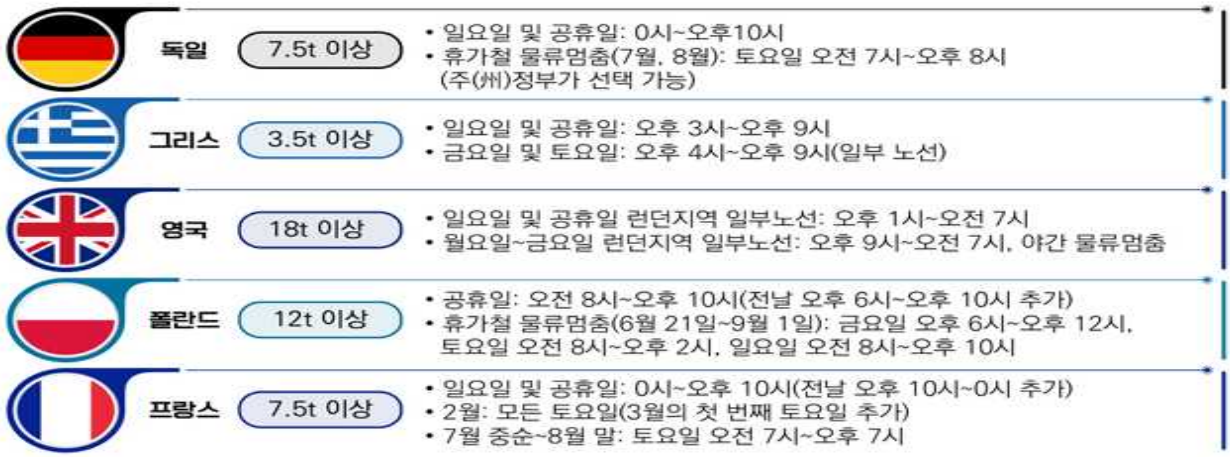
❍ **독일에서는 공휴일의 상점폐점과 물류멈춤**을 **1956년부터 법제화**하였고, 오늘날까지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공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독일은 **1956년 「상점폐점법(LadSchlG)」이 연방법으로 제정**된 이후 **상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해 오고 있다. 이는 1919년 이래 개정되지 않은 「기본법(GG)」 제140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이며, 기본권 보호와 노동협동조합(Arbeitsgenossenschaft)의 압력에 의해 제정되었다.

❍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일요일 휴무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일요일에 상점문을 열도록 하는 것은 「기본법(GG)」의 정신을 훼손**한다. 일요일과 기타 공휴일은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하는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라고 결정**하였다.

❍ 한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일요일 및 공휴일, 또는 휴가철**에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서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림 1 유럽 주요국의 고속도로 물류멈춤 시간과 내용



※ 자료출처: https://www.timocom.de/blog/lkw-fahrverbote-uebersicht-581632 (재구성)

❍ 여기서는 유통노동자가 공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법적 근거로서, 「기본법(GG)」과 함께 「상점폐점법(LadSchlG)」,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 「휴가철 여행령(FerienreiseV)」으로 대표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주요 입법

1. 「기본법(GG)」

❍ 독일연방공화국헌법인 **「기본법(GG)」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기본권**(종교의 자유와 그 행사의 자유) **보호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기본법(GG)」 **제140조를 통해** 적용되는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제139조의 일요일과 공휴일 보호에 대한 입법위임을 통해 구체화된다. 연방헌법재판소 결정(BVerfGE)에서도 **독일에서의 일요일 및 공휴일의 휴식권은 종교적·기독교적 전통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으로 법령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 **바이마르헌법 제139조는** 종교적·기독교적 의미 이외에도 근로와 휴식의 리듬에 기초한 인간의 재충전 가능성과 사회적 공동생활 및 인격의 발현에 기여하는 이른바 **'기본권 보호(Grundrechts voraussetzungschutz)'라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입법자가 일요일과 공휴일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기본법(GG)」에 근거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기본법(GG)」 제4조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제140조의 일요일 및 공휴일 보호는 입법자에게 평일 근무와 일요일 휴무라는 원칙과 그 예외를 확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 **일요일에도 행해지는 근로는** 소방대, 경찰, 의료기관 등과 같이 시민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한편 호텔과 요식업 등의 경우, 시민들의 평온한 일요일을 보장하고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상점폐점법(LadSchlG)」

❍ 1956년 11월에 제정된 상점의 영업제한에 관한 연방의 **「상점폐점법(LadSchlG)」에서는** 연방 모든 주의 **모든 상점에 대한 영업시간과 의무휴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2006년 이후 연방의 입법 권한을 축소하고 주(州)의 입법 권한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점의 영업시간과 휴무제에 대한 사항(「기본법」 제70조제1항)은 각 주(州)의 권한으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주에서 제정된 법률은 동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상점폐점

- 폐 점 일 : 모든 일요일과 공휴일(법정공휴일)
- 폐점시간 : 월~토요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 대　　상 : 모든 종류의 가게, 약국, 주유소, 기차역 매점 등

❍ **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물건판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가게, 약국, 주유소, 기차역 매점 등이 해당된다(제1조). 이 상점들은 모든 일요일과 공휴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20시에서 익일 6시까지, 12월 24일이 평일인 경우 14시에서 익일 6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빵집은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5시 30분에 문을 열 수 있다(제3조)**

❍ 동법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동법 제3조의 일반적인 상점의 폐점시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상점의 소유자나 영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법 제17조에서 규정된 근로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경우 2,500유로(약 3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법 제3조 이하의 **폐점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500유로(약 7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24조).

❍ **상점의 소유자나 영업주가 폐점시간 이외의 영업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의 노동력이나 건강을 상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80일에 해당하는 일수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제25조).

3.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

❍ **연방헌법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보호하는 규정**은 1956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 제30조에서 '공휴일 물류멈춤'으로 입법화되어,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일부 혼잡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 7.5t 이상의 화물자동차(Lkw)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일요일과 공휴일 0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는 최대 허용 무게 7.5t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예외로서 물류멈춤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위탁자에게 가장 가까운 적합한 하역장까지 철도와 도로가 결합된 화물 운송인 경우, 최대 200km 이내의 운송
- 적재 또는 하역 지점과 반경 150km 이내의 항만과 도로가 결합된 화물 운송(반입 또는 반출)
-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식재료의 운송- 동물성 부산물 재료의 운송
- 사고 또는 비상사태 복구, 견인과 고장지원 차량의 투입- 살아있는 꿀벌의 수송

❍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 제30조제4항에 따른, 2024년도 화물자동차 물류멈춤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1월 1일	새해	5월 9일	예수승천대축일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날*
3월 29일	성금요일	5월 20일	오순절	11월 1일	성인의 날*
4월 1일	부활절	5월 30일	성체성혈대축일*	12월 25일	성탄절
5월 1일	노동절	10월 3일	통일절	12월 26일	박싱데이

*표시는 제외되는 주가 있는 공휴일이다.

❍ **운송업자가 대형운송업자의 주문에 기초하여 자신의 물건을 제3자에게 배송하는 계약**은 그 각각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고용(또는 위임) 계약,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운송업자라 하더라도 유사근로자로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관련 법과 판례의 근거가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의 적용을** 받는다.

❍ 고의 또는 과실로 동법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도로교통법(StVG)」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제49조제1항).

4. 「휴가철 여행령(FerienreiseV)

❍ 1985년에 제정된 연방의 **「휴가철 여행령(FerienreiseV)」에서는 여름휴가철에 7.5t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트레일러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1조제1항).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StVO)」의 물류멈춤을 여름휴가철로 확대한 것으로, 화물차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의 휴가철 물류멈춤

- 기 간 : 7월 1일 ~ 8월 31일(여름휴가철)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8시
- 대 상 : 총 중량 7.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 구 간 : 고속도로(Autobahn) 통행량 과다 구간

❍ 동법 제1조제1항의 금지는 **고속도로 양방향 노선에 적용**되고, 그 밖에 **시가지 외부의 연방 고속도로 양방향에도 적용**된다(제1조제2항).

❍ 동법 제1조의 규제는 다음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

- 연방경찰을 포함한 모든 경찰 / 행정부의 공공 도로 서비스
- 「도로교통법(StVG)」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방대 또는 재난 통제
- 연방군 또는 연방군이 위임한 상업 운송서비스 회사의 긴급한 필요를 요하는 교통, 운송과 물류 / 긴급한 군사적 활동이 필요한 경우
- 「연방성과법」과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운송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

❍ 또한 독일연방의 도로교통당국은 다른 교통수단을 통한 운송이 불가능한 긴급한 경우, 동법 제1조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제4조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동법의 규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StVG)」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제5조).

□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2024년 1월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영업규제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독일은 대부분의 상점이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문을 닫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휴일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기도 한다.** 독일 사회에도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휴일의 노동자 휴식권은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 나아가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요일 및 공휴일에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나라마다 규제 대상과 내용은 다르지만, **노동자에게 휴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는 같다.

❍ 독일에서 **휴일의 상점폐점은 휴일의 물류멈춤과 연결**되어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일요일과 공휴일에 상점을 닫아왔기 때문에 휴일 물류 멈춤도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추천 자료

- 홍일선, 일요일과 공휴일 보호의 헌법적 의미, 강원법학(2013. 6.) 1~36쪽
- BackhausNils, BraunerCorinna, TischAnita, Auswirkungen verkürzter Ruhezeiten auf Gesundtheit und Work-Life-Balance bei Vollzeitbeschäftigsten, Ergebnisse der BAuA-Arbeitszeitbefragung 2017
- Haus/Krumm/Quarch, Gesamtes Verkehrsrecht G. Sonn- und Feiertagsfahrverbot, Thomas Kreusch in NK-GVR, StVO § 30 Rn. 10, 3. Auflage 2021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1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1월 첫째주	외교통일	○ (2024년 제16차)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 : 개요와 함의 ○ 필리핀의 남중국해 전략과 역내 질서에 대한 함의 ○ (2024)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의 전략적 의도와 향후 전망 ○ 미중갈등에 따른 태평양도서국의 진영화와 한-태평양 도서국 전략 ○ 북·러 동맹과 한국의 정책 ○ 미국 차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 일본의 이시바 신내각 출범 : 배경 및 그 함의 ○ 이시바 내각 인사의 함의 ○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 우리나라 농업생산성 현황과 과제 ○ 對美 쌀 가공식품 수출현황 분석 및 수출확대 방안
	문화체육관광	○ 싱가포르 관광산업 DX정책과 시사점 ○ 임도 활용한 경기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영국의 「미디어 법 2024」에 따른 방송·OTT 규제 변화
	국방	○ 중국의 핵전력 강화와 한국안보에의 영향 ○ (2025년) 북핵 쟁점 :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 디지털 전환 발전 유형에 따른 맞춤형 기업 지원 방안 연구 ○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비교 및 시사점 ○ (2030) AI반도체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방안 스트레스 테스트 ○ 생성형 AI 시대, 생체인식 기술의 기회와 도전 ○ 방송영상산업에서의 생성형 AI 활용과 시사점 ○ 차세대 AI반도체(Next-GPU) 주요 이슈와 시사점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1월 첫째주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	○ 코로나19 이후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 및 시사점 ○ 중국의 對한국 통상마찰 가능성과 대응방안 ○ EU 산업별 관련 법규 동향. 1, 화학, 철강, 원전, 수소, 전력, 디지털 ○ (2024) 미 대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 ○ EU 산업별 관련 법규 동향. 2,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가전, 플라스틱, 식품, 의료·제약 ○ 일본 IP 랜드스케이프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C-커머스 플랫폼의 성장과 국내 진출 현황 분석
	정보	○ 최근 사이버 위협 실태와 한국의 인태 사이버 안보 외교전략
	환경노동	○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 ○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
	행정안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례의 발굴 연구 ○ 지속가능한 미래 기획을 위한 인구의 질적 전망과 정책과제 ○ 경기도 지방외교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자
	정무	○ 해외 주요국의 역모기지 현황 및 시사점 ○ 실물자산토큰(RWA)의 부상과 전망 : De-Fi의 재부흥을 꿈꾸다
	정무, 행정안전	○ 지역경제의 혁신과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방안
11월 둘째주	외교통일	○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군사적 특성 및 시사점 ○ 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 연계 전략 ○ 관세와 감세 대 규제와 증세 ○ 북한군 러시아 파병의 의미와 쟁점 ○ 일본 중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내각의 경제정책 전망 ○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 미 해군 부활을 위한 한국의 역할 ○ 자민당 정치의 위기 : 장기집권, 정치자금, 정치개혁 ○ 서론: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 변하지 않는 자민당과 야당 ○ 탈 아베 시기 진입과 정치 쇄신 압력 속 이시바 정권의 딜레마 ○ 이시바 자민당의 '지키다' 지향과 경제정책의 향배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1월 둘째주	행정안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법제 동향과 전남 시사점 ○전남,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다 ○부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정부의 이전재원 배분이 지역 내 외국인주민 유입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개방형 공간정보 국제협력 구축방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미국 AI 국가안보각서(AI NSM) 분석 및 시사점 ○'2024년도 STS 포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략 추진 거버넌스 분석 ○AI 에이전트로의 진화를 꿈꾸다 ○디지털 자산 규제의 네 가지 트렌드 ○국내·외 피싱(Phishing) 대응 현황 및 시사점 ○AI 위험 유형 및 사례 분석 ○고령화 사회 에이지테크(AgeTech) 기술 및 정책 현황 ○오픈소스 생태계 성장과 전문기업의 확산
	국토교통 행정안전	○지역버스의 위기와 목포시 버스파행의 시사점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유원시설업 중대한 사고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	○지역관광사업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최근 OTA(온라인여행사) 시장 동향 분석 및 정책과제 ○인구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역할 변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연구
	정보	○2024 사이버보안 : 주요 전략 및 중점 분야 ○최근 북한의 해킹 공격 사례와 대응 방향
	여성가족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 분야 자치법규 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북지역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 방향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울산지역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과 시사점 ○경기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현황과 시사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보건복지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조약 협상의 쟁점과 향후 방향
	행정안전, 교육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1월 둘째주	법제사법 행정안전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2024) 미국 대선과 지식재산 정책 전망 ○주요국의 제약·바이오의약품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 및 시사점 ○주요국의 위조상품 피해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24) 미국 대선 :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환경노동	○AI시대, 일자리의 미래와 미래의 일자리 ○기후위기 적응형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관리 방안
	환경노동 여성가족	○경상북도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사후관리 연구
	기획재정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국방	○국가 미래전략을 위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vol.2, 출생률 하락과 국방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행정안전	○고령화시대 대응 부산형 생활서비스 로봇산업 육성 방안
	정무	○금융분야에서 자율규제의 활용상 법적 쟁점
	여성가족, 행정안전	○부산지역 중장년여성 생활형 창업 지원체계 개선 방안
11월 셋째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SPRIN-D 및 ARIA 연구동향 ○산업 메타버스 현황과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방향 전망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의 주요 쟁점 및 규제개선 방안 ○'트럼프 귀환'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국제 통상환경 전망 ○자연자본 공시 확대에 따른 기업대응전략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컨테이너 해상운임 변동 특징과 2025년 전망
	외교통일	○트럼프와 푸틴, 그리고 우크라이나 : 미국을 위한 단기 처방과 유럽 안보 후유증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분석과 미국 외교 전망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보는 중국의 셈법과 예상 행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한미 관계 전망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1월 셋째주	외교통일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인태지역의 안정을 위한 한일중 3국 협력 ○트럼프 2기 출범, 다가올 외교안보 과제 10문 10답 ○트럼프 2기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안 ○美 생명과학 분야 위험연구검토법(Risky Research Review Act) 발의가 주는 국가안보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 속 국가이익의 전략적 전개 ○트럼프 포비아 평가와 시사점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북한군 러-우전쟁 파병의 지정학적 의미 분석
	교육	○학교현장 위험요인과 교육공무직 안전보건대책 강화 방안 ○사교육 과열 현상, 해법은 없는가? ○진로교육의 성과 분석 : 시도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환경노동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과 인력수요 구조 변화 ○청년패널 조사 심층 분석 : 코호트 변경에 따른 변화 ○탄소중립 정책연구. 3, 탄소중립 정책수단 이행평가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인재양성 방향 ○대학·공공연 지식재산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건복지	○미국 「ARPA-H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마음까지 치유하는 디지털 기술 : '엠씨스퀘어'에서 '디지털 치료제'까지 ○5060 시니어의 The Next 라이프
	기획재정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주요국의 R&D 지원세제 현황 : 특허박스제도를 중심으로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인천지역 산업단지 현황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행정안전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효과 모니터링과 활용방안 ○부산 미래교통전환을 위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도입방안
	행정안전	○국내 임시주거시설의 지정 현황 및 개선 방안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과제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1월 셋째주	환경노동 행정안전	○초고령사회 경북의 돌파구, 정년연장
	정무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국방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북핵정책과 북·미 핵군축협상 전망
	보건복지 행정안전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 : 의료부문

2 의회 도서 자료실 신착 도서 목록

※ 2024년 11월 신착 도서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도서는 자료실에서 대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순	도 서 명	지 은 이	출 판 사
1	**지금은 지방 시대 :** 경북이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김연성 외	한국경영학회
2	**좋은 정부, 정치인, 관료** : 공정하고 능력 있는 관료제 만들기	칼 달스트룀 ; 빅터 라푸엔테 [공]지음 ; 신현기 옮김	한울
3	**정치, 역사를 만나다** : 역사에 정도(定道)를 묻다	김영수	창해
4	**정치검사** : 누가 고발사주를 덮었나	조성은 ; 전혁수	해요미디어
5	**우리는 왜 극단에 서는가** :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는 양극화의 기묘한 작동 방식	바르트 브란트스마 지음 ; 안은주 옮김	한스미디어
6	**전쟁 속 외교** : 싸우면서도 대화하는 세계외교의 역사	안문석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7	**정보기관의 스파이들** : 전직 국정원 요원이 들려주는 스파이들 이야기	정일천	세이프하우스
8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이효원	현대지성
9	**국가재정** : 이론과 실제	김춘순	북마을
10	**미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 예비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까지	김동영	한울엠플러스
11	**미국을 안다는 착각** :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진짜 힘의 실체는 무엇인가	김봉중	빅피시
12	**세계의 혁신 대학을 찾아서** : 세계화, 전문화로 나아가는 대학	안문석	살림터
13	**외로워서 배고픈 사람들의 식탁** : 여성과 이방인의 정체성으로 본 프랑스	곽미성	어떤책
14	**트렌드 코리아 2025** : 2025 대한민국 소비트렌드 전망	김난도 ; 미영 ; 최지혜[공]	미래의창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15	**입소스 마켓 트렌드 2025** : 마켓 리서치 글로벌 리더의 대한민국 트렌드 보고서	입소스 ; 엄기홍 ;유은혜저	한국경제신문
16	**머니 트렌드 2025** :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할 55가지 성공 시나리오	정태익 외	북모먼트
17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전략**	이차희 외 [공저]	국토연구원
18	**사회복지사가 꿈꾸는 사회복지**	송장희	황소걸음
19	**파타고니아 인사이드** : 파타고니아가 그리는 책임경영 기업의 미래	이본 쉬나드 ; 빈센트 스탠리 지음 ; 이영래 옮김	라이팅하우스
20	**일을 잘 맡기는 기술** : 일 잘하는 리더보다 일 잘 맡기는 리더가 되라	모리야 도모타카 지음 ;정지영옮김	센시오
21	**스마트폰 끄기의 기술** : 옥스퍼드 신경과학자가 알려주는 무한 스크롤에서 벗어나는 법	페이 베게티 지음 ;이혜경옮김	부키
22	**길 위에 장이 선다** : 파이낸셜뉴스 창간 24주년 기념	파이낸셜뉴스 특별취재팀	파이낸셜뉴스
23	**유튜브 쇼츠 60초 재테크** : AI 도구를 활용한 쇼츠 만들기	김선웅	BM성안당
24	**모두의 금리 :** 흔들리는 부의 공식과 금리의 황금 비밀	조원경	에프엔미디어
25	**너무나 정치적인 시골살이** : 망해가는 세계에서 더 나은 삶을 지어내기 위하여	양미	동녘
26	**자기만 옳다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마리테레즈 브라운 지음 ; 장혜경 옮김	갈매나무
27	**불안 세대** :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조너선 하이트 지음 ;이충호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8	**재앙의 지리학** : 기후붕괴를 수출하는 부유한 국가들의 실체	로리 파슨스 지음 ;추선영옮김	오월의봄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29	(박태웅의) **AI 강의 2025** : 인공지능의 출현부터 일상으로의 침투까지 우리와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지능의 모든 것	박태웅	한빛비즈
30	**플래닛 아쿠아** : 우주 속 우리 지구를 다시 생각하다	제러미 리프킨 지음 ;안진환옮김	민음사
31	**시대예보** : 호명사회	송길영	교보문고
32	**다문화 국가로 가는 길** : 저출생, 지역 소멸 시대의 이민정책과 대안	김봉구	문예춘추사
33	**가짜 얼굴, 진짜 위험** :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예방 가이드	곽준호 ; 이재호	지식과감성
34	**술의 배신** : 우리가 몰랐던 술에 관한 오해와 진실	제이슨 베일 지음 ;이원기옮김	에디터
35	**나는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 삶의 감각으로 이야기한 장애의 세계	앤드루 릴런드 지음 ;송섬별옮김	어크로스
36	**미사일 바이블** :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미사일에 관한 모든 것	이승진	플래닛미디어
37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 : 주어진 삶에서 벗어나 나만의 방향을 찾아주는 안내서	나영웅	지음미디어
38	**최소한의 교양** : 과학과 미술	노인영	문예출판사
39	**그거 사전** : 대체로 즐겁고 가끔은 지적이며 때로는 유머러스한 사물들의 이야기	홍성윤	인플루엔셜
40	(업무시간을 반으로 줄이는)**AI 활용법** : 챗GPT로 심플하게 일하고, 빠르게 퇴근하라	이임복	천그루숲
41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브루 View 영상 편집** : 유튜브, 숏폼 영상부터 버튜버, 인공지능 목소리 더빙까지 생성형 AI로 영상 콘텐츠	지현이	시프트
42	**기묘한 골동품 서점**	올리버 다크셔 지음 ;박은영옮김	RHK알에이치코리아
43	**서점** : 세계를 이해하는 완벽한 장소	호르헤 카리온 지음 ;정창옮김	이봄
44	**현장 사례로 보는 기록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 엮음	한울엠플러스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45	**서평 쓰기, 저만 어려운가요?** : 서평 쓰기 5단계라면 고민 끝~	김민영; 류경희 [공]	엑스북스
46	**기자유감** : 1호기 속 수상한 민간인 특종부터 바이든 날리면을 거쳐 도어스테핑 충돌의 슬리퍼까지 윤석열 정부 1년을 가장 뜨겁게 지나온 MBC 이기주 기자의 작심 발언	이기주	메디치미디어
47	**기사쓰기 워크북**	하준우	나남
48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되지 마라** : 2500년 동양고전이 전하는 인간관계의 정수	이남훈	페이지2북스
49	**생각의 기술**: 바로 써먹는 논리학 사용법	코디정	이소노미아
50	**태몽! 새 생명의 속삭임**	국경복	꿈사랑심리상담연구소
51	**선악의 기원** : 아기를 통해 보는 인간 본성의 진실	폴 블룸 지음;최재천;김수진 옮김	21세기북스
52	**풍수 부자들** : 운이 모이는 터, 공간, 사람의 비밀	천동희 지음	유노라이프
53	**가면을 벗어던질 용기** : 진짜 내 모습을 들킬까 봐 불안한 임포스터를 위한 심리학	오다카 지에 지음 ;정미애옮김	21세기북스
54	**못생김의 심리학** : 정신의학 전문의의 외모 심리학 이야기	이창주	Mons(몽스북)
55	**호감의 시작** : 관계, 일, 인생이 풀리는 매력의 법칙	희렌최	북로망스
56	**만화로 보는 심리법칙** : 효율적으로 일하고 유연하게 관계 맺고 싶은 당신을 위한 45가지 이야기	강호걸	오아시스
57	**이토록 다정한 개인주의자** :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도덕	함규진	유노책주
58	**신독, 혼자 있는 시간의 힘** :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조윤제	비즈니스북스
59	**붓다가 된 어느 흑인 사형수** :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의 한 무고한 사형수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자비스 제이 마스터스 지음; 권혜림옮김	불광출판사
60	(2500년 동안 사랑받은)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박재현옮김	포레스트북스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61	**이제 이 길밖에 없습니다** :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성경153올람> 운동 실전 매뉴얼	김대동	브니엘
62	**신의 설계자들** : 이스라엘 민족의 비밀스러운 흔적	아스라엘 크놀지음 ;정예중옮김	PCKBOOKS
63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 뉴욕식물원 가드너의 식물과 영성 이야기	이성희	선율
64	**상처 입은 세상,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설대위 지음 ;김민철 옮김	IVP
65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 정확한 수치와 통계로 보는 신앙 양극화 시대 2025년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	지용근 ; 김영수 ;전우택[외]	규장
66	**나는 교주다** : 사이비 종교 전문 탐사 기자의 국내 최초 잠입 취재기	장운철	파람북
67	**과학잡학사전 통조림** : 지식을 쌓으려면 통째로, 조목조목! : 동물편	사마키 다케오 외 지음 ;서수지옮김	사람과 나무사이
68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우주편** : 양자역학, 상대성이론을 몰라도 이해하는 우주 첫걸음	마쓰바라 다카히코 지음 ; 송경원 옮김	유노책주
69	**당신은 화성으로 떠날 수 없다** : 생명체, 우주여행, 행성 식민지를 둘러싼 과학의 유감	아메데오 발비 지음 ;장윤주옮김	북인어박스
70	**코스모스 씽킹** : 우주를 이해하면 보이는 일상의 본질	BossB 지음 ; 이정미 옮김	알토북스
71	**기후, 기회** : 파국의 시대에 맞서기 위한 기후 전망과 전략	최재천 [외]지음 ;녹색전환연구소 엮음	북트리거
72	**동물의 감정은 왜 중요한가** : 동물의 삶을 사랑하는 과학의 모든 시선	마크 베코프 지음 ;김민경옮김	두시의나무
73	**찬란한 멸종** : 거꾸로 읽는 유쾌한 지구의 역사	이정모	다산북스
74	**다정한 거인** : 평화를 부르는 고래의 생태·사회사	남종영	곰출판
75	**피, 생명의 지문** : 생명, 존재의 시원, 그리고 역사에 감춰진 피 이야기	라인하르트 프리들 ; 셜리 미하엘라 소일 지음	흐름출판
76	**냄새의 쓸모** : 일상에서 뇌과학까지	요하네스 프라스넬리 지음 ;이미옥옮김	에코리브르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77	**치매예방 90% 가능해지다** : 아밀로이드 백신치료	나덕렬 지음 ; 박종신 일러스트	뇌미인
78	**의료산책. 2**, 의료를 둘러싼 이야기들 : 법의학자, 끝나지 않는 의료 논쟁에 매스를 대다	김장한	북랩
79	**정밀의료 시대가 온다** :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밀의료'	강진형	청년의사
80	**내 몸을 읽고 쓰는 힘 몸해력** : 불안과 무기력에서 해방되는 자기돌봄의 시간	디아	더퀘스트
81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 : 이 죽일 놈의 피로와 결별하는 법	에이미 샤 지음 ;김잔디옮김	북플레저
82	**실무자를 위한 알기 쉬운 농지법 강의** :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법 실무와 판례	김영기	책과나무
83	**유비쿼터스 스마트 농수산업**	이정완	좋은땅
84	**과학기술 미래 농업 · 농촌의 열쇠** : 202 ~ 2024년의 발자취	조재호	진한엠앤비
85	**반려견 행동교정사의 고민상담 대백과** : 10만 반려견과 반려인의 삶을 바꾼 솔루션	스티브 만 ; 마틴 로치 지음 ; 이주현 옮김	동글디자인
86	**고양이처럼 생각하기** : 행동학에서 본 고양이 양육 대백과	팸 존슨-베넷 지음 ;최세민옮김	페티앙북스
87	(원헬스로 여는)**수의정책 콘서트**	김용상	비앤씨월드
88	**지방 중소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혁신지구 활용방안**	박정은;임상연;김유란;박성경;김선홍지음	KRIHS(국토연구원)
89	**탄소시장**	황석태	OJERIbooks
90	**소방의 역사**: 불과 싸워온 인류사	송병준	부키
91	**건축가의 공간 일기** : 일상을 영감으로 바꾸는 인생 공간	조성익	북스톤
92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	국립익산박물관	눌와
93	**바람공방의 페어아일 니팅** : 기초부터 스틱 기법까지 페어아일의 모든 것	바람공방 지음 ;배혜영옮김	한스미디어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94	(누구나 신의 손이 되는)**쉬운 리폼**	이에디나;양재빈[공]	용감한까치
95	**하루 30분 라인이 예뻐지는 발레핏**	김정은	베가북스
96	**마음이 부자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 행복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정서 육아법	박소영	북크레용
97	**데일리 대드** : 철학자 아버지가 성찰하는 부모에게 전하는 365일 삶의 지혜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이현주옮김	청림Life
98	**디자이너의 유학** : 영국 왕립 예술대학 출신 아트 디렉터의 유럽 디자인 유학 가이드	설수빈	디자인하우스
99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 :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조'	엄태봉	경인문화사
100	**미술관 가이드의 프랑스 여행법** : 전시실 밖에서 만나는 예술과 역사	이혜준	clove(클로브)
101	**한 번쯤, 뮤지엄**	박소영	산하
102	(책으로 듣는 K-POP 작사 수업) **그래서 작사가 되려면 :** 《그니까 작사가 뭐냐면》 후속 실전 연습서	안영주	더디퍼런스
103	**연예인**	신경애	에이애즈비
104	**라인댄스 가이드북**	이미경;이정숙	디자인21
105	**한국축구, 바꿔야 산다!**	Cesare Nam	밥북
106	**소림탁구** : 초보부터 고수까지 세계최강 중국탁구의 비전 해부서	daum 1004	때꼴
107	**골프규칙을 알면 골프가 쉽다** : 최신 골프규칙 완전정복 300+	최존하; 조장이지음;조이그림	오름
108	(어른의 문해력 차이를 만드는)**한 끗 어휘력**	박선주	매일경제신문사
109	**인문학과 손잡은 영어 공부. 2, 3권**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110	(해외에서 당황하지 말고) **노 패닉 여행영어**	티나	길벗이지톡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111	(100일 100문장으로 원어민처럼 말하는) **손주랑 생활영어 100**	파워잉글리시 지음 ;안정아옮김	일상이상
112	**그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하더라** : 말 매력으로 완성하는 대화의 에티켓!	김령아	스마트비즈니스
113	**버킷 리스트** : 나태주 시집	나태주 지음 ;지연리 그림	열림원
114	**대온실 수리 보고서**	김금희	창비
115	**율의 시선** : 장편소설	김민서	창비
116	**친애하는 나의 술**	김신회	여름사람
117	**이중 하나는 거짓말** : 장편소설	김애란	문학동네
118	**내일의 엔딩** : 소설	김유나	창비
119	**위대한 유산** : 단편집	김이수	지식과감성#
120	**참 좋았더라** : 이중섭의 화양연화	김탁환	남해의봄날
121	**망원동 브라더스** : 장편소설	김호연	나무옆의자
122	**미망. 1 - 3권** : 장편소설	박완서	민음사
123	**빛이 이끄는 곳으로** : 장편소설	백희성	북로망스
124	**국본**: 왕좌의 난 : 역사소설	서자영	고즈넉이엔티
125	(광개토태왕)**담덕. 9**, 5국 전쟁 : 역사소설	엄광용	새움
126	**파저** : 소설로 읽는 세종의 여진 정벌기	오규원	21세기북스
127	**잃어버린 대지** : 간도, 찾아야 할 우리 땅	오세영	델피노
128	**시티뷰** : 장편소설	우신영	다산책방
129	**왜란** : 장편소설	이광재	목선재
130	**영원한 천국** : 장편소설	정유정	은행나무
131	**그대의 차가운 손** : 장편소설	한강	문학과지성사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132	**입속 지느러미** : 조예은 장편소설	조예은	노랑무늬영원: 소설집
133	**내 여자의 열매** : 소설집	한강	문학과지성사
134	**한강 : 디에션설**	한강	문학동네
135	**흔한남매. 17**	흔한남매 원작 ; 백난도 글 ; 유난희 그림	미래엔아이세움
136	**즐거운 어**른 : 산문	이옥선	이야기장수
137	**눈치는 개나 주고 떠난 나 홀로 세계여행** : UDT 전역 후 나를 찾아 떠난 청춘의 기록	델타	미다스북스
138	**센 베노 몽골** : 푸르러서 황홀한 12일간의 인문기행	유영봉	작가와비평
139	**유럽 예약** : 나의 유럽 드리밍북	청춘유리 글·사진	허밍버드
140	**외국어를 배워요, 영어는 아니고요** : 좋아서 하는 외국어 공부의 맛	곽미성 지음 ;은작가일러스트	어떤책
141	**내가 너에게 좋은느낌이면 좋겠어** : 삶은 수많은 좋은느낌들로 매일 조금씩 더 견고해진다	김민철 ;김하나 ;하미나;홍인혜; 황선우지음	21세기북스
142	**나는 여전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 젊은 도예가의 꿈을 향한 도전과 응원	김소영	드림셀러
143	**천개의 베개**: 로드 에세이	노동효	나무발전소
144	**드라마** : 그럼에도 친구가 되는 여자들	서한나	글항아리
145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오혜선	더미라클
146	**그리다가, 뭉클** : 매일이 특별해지는 순간의 기록: 에세이	이기주	터닝페이지
147	**소중한 보물들**: 단상집	이해인 지음 ;정멜멜사진	김영사
148	**고독사를 준비 중입니다** : 홀로 인생을 마주할 줄 아는 용기와 자유에 대하여	최철주	중앙books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제정할 수 있는지?(강원특별자치도, 의견24-0351, 2024. 10. 16.)

□ 질의요지

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부칙에 조례 시행 당시 100세가 넘은 주민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는 **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은 도지사 권한 침해가 있는 바, **'지급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배분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조례 규정 간 체계 및 문언의 의미,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바,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급 조례안’(이하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100세가 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장수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수축하금 신청과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도지사에게 장수축하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도지사에게 반드시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장수축하금을 **“한 차례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로 하여금 지급 횟수에 관한 재량의 여지 없이 대상자별로 1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해당 규정에서 **지급 횟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장수축하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이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는 지급 근거규정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는 **도지사에게 장수축하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조례 시행 당시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조례안 부칙 제2조가 조례 시행 당시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해당 조례안의 시행으로 주민등록상 나이가 100세가 된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100세가 넘은 사람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그러한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2 이·통장이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영동군, 의견24-0349, 2024. 10. 16.)

□ 질의요지

가. **이·통장이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이·통장 및 반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u>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u>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u>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u>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u>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u>

한편,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춘천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제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지방세의 체납이 있을 경우 해당 월정수당과 상여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및 상여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기준경비 중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규칙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4에서는 통장·이장·반장의 활동 보상금에 대하여 그 기준액만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해당 **활동보상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여타 법령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통장의 월정수당 및 상여금**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그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통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원인행위와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제재조치 간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행정기본법」 제13조**에서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춘천시조례안에서는 제6조를 신설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통장 및 반장은** 읍·면·동장 등 **관계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하여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는바, 이 사안에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하는 경우 재기재한 내용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에 상위법령과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면서 문장의 논리,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이유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안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단순히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환경정비구역에 주택 소유 원거주민 등이 주택을 추가 신축할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른 생활기반 시설에 해당되는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24-0718, 2024. 11. 8., 민원인】

□ 질의요지

「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제1호)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하 "원거주민등"이라 함)이 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가목) 등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수도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5항),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제7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하는 기준에 관련된 규정의 취지나 목적은 어디까지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에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은 그 지정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한정하면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제1호), 생활기반시설(제2호) 등으로 그 종류를 제한**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신축 대상 농가주택 및 주택의 연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 및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등 같은 규칙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를 원거주민과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수도법령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 주체를 모두 제한하여 한정적인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거주민등이 환경정비구역에 신축할 수 있는 주택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하의 생활기반시설이어야 하는데, 환경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환경정비구역에 신축할 수 있는 주택의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이미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수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비구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령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원거주민등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거주민등의 생활환경 개선 등 제한된 경우에만 환경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도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거주민등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에서는 신축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인이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건축 대상의 연면적을 제한하고**

한정적인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하여 건축물의 총량을 제한하려는 수도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5호**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나목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경우에 생활기반시설의 개축·재축·증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2.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3. (생 략)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 자. (생 략)

2.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나. ~ 마. (생 략)

2. (생 략)

2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24-0711, 2024. 11. 8.】

□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같은 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함)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6호**에서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으로 약칭하고 있었는데,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 주택의 유형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본문)하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4년보다 장기인 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4년보다 장기인 기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간을 가리키는데,** 해당 호에서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4년은 계속 임대하여야 하되, 그 이상의 기간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하는 기간을 통칭하여 "4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4년 이상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임대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기간은 4년 이상의 기간 중 최소기간인 4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주택법령에서 이러한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임대의무기간에 관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장등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민간임대주택법령에서 임대의무기간의 변경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나 위임 근거를 두고 있지도 않은바, 민간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인 4년 외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따로 정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그러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되, **민간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있는데, 만일 임대의무기간을 **4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의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라는 **불확정적인 기간이 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라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침익적 행정행위인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임대의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바, **국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나아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4년보다 장기인 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4년보다 장기인 기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 제

7. ~ 15. (생 략)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 ⑦ (생 략)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 ⑥ (생 략)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 15. (생 략)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